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62 발의연월일: 2021. 9. 7.

발 의 자:김성주·최혜영·김민기

홍성국 · 양정숙 · 김민철

황운하 · 이학영 · 허종식

안호영 · 임호선 · 박상혁

이용빈 · 정춘숙 · 조승래

강병원 · 전용기 · 윤준병

조오섭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 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 년 마련하여 그 준수율을 조사하고 있음.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중요 사항임에도, 사업 유형이나 지역, 지원방식에 따라 격차가 큰 상태로서, 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장기근속을 해치고 불안을 유 발, 전문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격차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음.

그러므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지침을 단일 기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 기준을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의 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인의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 대책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수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이하 "보수지침"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기준의"를 "보수지침의"로한다.

- 1.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 2.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임금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 3. 승급 및 승진에 관한 사항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 2. 보수지침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따라 다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 1.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 ⑤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각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과 신분보장) ①·② (생 략)	과 신분보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2
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	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심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포함된 사회복지사 등의 보
노력하여야 한다.	수에 관한 지침(이하 "보수지
	<u>침"이라 한다)을</u>
<u> <신 설></u>	1.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u><신 설></u>	2.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
	른 임금의 가산지급에 관한
	<u>사항</u>
<u><신 설></u>	3. 승급 및 승진에 관한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	4
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	<u>보수</u>
<u>에 따른 기준의</u> 지방자치단체	<u> 지침의</u>
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	
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u>.</u>

⑤ (생 략)<신 설>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 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 · 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 ·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 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 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 ·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 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 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 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 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하게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 선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u>관한 사항</u>
- 2. 보수지침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 치는 사항
- ③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 원 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 1. 사외목시사 등에 관한 약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 ⑤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
 ·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
 회의 기능과 각 처우개선위원
 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